#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44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노웅래·서영석·송옥주

신정훈 • 유기홍 • 이병훈

아침(비)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한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발생 사태 등이 정수처리공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가요구되고 있음. 정수장은 설비 운영 중심의 사업현장으로, 실무자급 전문인력(3급)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따라,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국가기술자격 평가방식이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과정이수형 방식의 확산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행 시험검정형과 병행하여 과정이수형(3급 한정) 방식을 도입할필요가 있음.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배치기준 준수율이 저조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관심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정수시

설운영관리사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정이수형 제도의 도입(안 제24조 제1항, 제3항 개정, 제6항 신설)
  -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한정)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1항, 제3항 개정)
  -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4조 제6항 신설)
-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87조 제3항 제3의4호 신설)
  - 1) 수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이미비함에 따라,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합격"을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격"을 "합격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자격증 교부절차,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제3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정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 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 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 증 발급을 신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u>합격하거</u>나, 제1항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 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 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 자격증 교부절차,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 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제87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삭 제 2. ~ 3의3. (생 략) <u><신 설></u>

4. ~ 9. (생략)

④·⑤ (생 략)

할	수	있다.

제8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2.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 9.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